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봉양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홍국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설함(안제2조)
- 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제5조)
- 다.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제6조)
- 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함(안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사업

-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사전연명의료의향서</u> ”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5년마다 수립--. ② ----- 포함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

--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명시함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영향 줄 가능성이 있음
2	제6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결과 현재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실태조사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 다만 <u>출연기관을 활용할 시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u>
3	제7조(사업)제1항	제6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및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결과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u>현재 현황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될 사업의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체추계 또한 곤란</u>
		제7호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제7조(사업)제1항에 따른 사업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 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소요비용 추정이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소요비용을 추정하려면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조사(붙임 참조)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실태조사 실시여부, 조사규모²⁾, 정책방향 등을 확정하는 한편 사업 규모, 사업형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 [출연기관을 통한 연구수행]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결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현황조사(출연기관 자체 연구수행) 시행 중이고, 향후 현황조사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출연기관을 통한 연구 진행을 가정할 경우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실태조사 규모 논의 필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서울시가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계획과 정책 방향성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도로 서울시 세부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할 경우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는 현재 실시하는 현황조사를 토대로 정책수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현 시점에서 수집가능한 정보로 비용을 추정하기에는 추계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서울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조사 및 정책개발

목차 구성(안)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장.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념 및 현황

1.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요
 - (1) 정의
 - (2) 발달 개요
 - (3) 대상 (대상질환, 기준권고)
 - (4) 유형
2.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및 법령
 - (1) 근거 법령 (암 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 (2) 수가체계
3.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 (1) 호스피스 이용률
 - (2) 호스피스 유형별 등록기간
 - (3)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기관 개소 현황 등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웰다잉 문화조성

3) 현황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상황에 따라 향후 구성되는 목차와 달라질 수 있음

제3장. 국외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례

1. 주요국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 (1) 개요
 - (2)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령 및 정책
 - (3)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2. 시사점 도출

제4장. 서울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분석

1. 전국 및 서울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비교
 - (1) 수요(자) 현황
 - (2) 공급 현황
2. 시사점 도출

제5장. 서울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주요결과
 - (1) 환자 및 보호자 (돌봄제공자) 인터뷰 조사 결과
 - (2) 병원 종사자 인터뷰 조사 결과
 - (3) 자원봉사자 등 조사 결과

제6장. 서울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위한 정책개발

1. 결론
2. 정책제언